

수 신 : 대구광역시의회 의장

제 목 :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2023년 3월 3일

대표 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이성오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재숙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03. 03.

발 의 의 원 : 이재숙, 김재용,
김재우, 손한국,
육정미, 이성오,
이재화, 전경원,
하병문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,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·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지원사업,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,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란 법 제31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청소년쉼터, 청소년 자립지원관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, 청소년복지 시설의 설치·운영, 퇴소청소년의 사후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
2.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
3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·상담

2.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·보호

3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, 진로지도

4.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

5.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·복지 지원

6.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, 주거, 생활, 교육, 취업 등의 지원

7.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

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통합지원체계 활용)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
5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

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